

의안번호	2217309
의 퇴 인	전현희 의원
회 답 일	2026.04.28.
추 계 번 호	26E1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및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및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7년 932억원, 2031년 1,405억원 등 2027~2031년 5년 간 총 6,167억원(연평균 1,23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2027~2031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4,607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1,560억원 감소 예상
 - 동 추계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과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영세율 적용 시 세수효과를 추계한 것으로, 자료의 한계로 반영하지 못한 산후패드 등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을 감안 시 실제 세수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부가가치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및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932	-1,215	-1,275	-1,339	-1,405	-6,167	-1,233
- 국세(74.7%)	-696	-908	-953	-1,000	-1,050	-4,607	-921
- 지방소비세(25.3%)	-236	-308	-323	-339	-356	-1,560	-312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제7호 신설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패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2217307)」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함	-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제11호	○ 영유아용 기저귀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삭제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제7호 신설	○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하여 추계함 - 산후패드 등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의 경우 공급가액 등에 대한 자료가 집계되지 않고 있어 추계가 어려우므로, 동 추계 결과에 포함하지 않음
2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제11호	×	-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동 개정안의 안 제105조(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영세율 적용)와 함께 추계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현재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이하 ‘생리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는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영세율 제도로 변경 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수 감소 규모를 추계함
-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와 영세율 제도 간 공제받는 세액의 차이를 활용해 추계
 - (면제) 매출세액을 공제하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제도
 - (영세율) 매출세액·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는 제도
 - (국내산) 국내 판매분 매출액을 기준으로, 현행 면제 하의 감면액과 개정

안의 영세율 적용 시 감면액 간 차이로 추계

- 국내 판매분 매출액(국내 출하액에서 수출액 제외)을 기준으로 산출함
- 매출액이 최근 연평균 증감률과 동일한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가정
- (수입산) 수입 시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이 영세율 적용에 따라 추가로 감면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활용해 추계
 - 추계기간 수입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이 최근 연평균 증감률과 동일한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가정
- 생리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 관련 수출입 품목코드(HS)에 해당하는 수출액 및 수입 부가가치세액을 활용하며, 자료 분류에 따른 불일치로 추계 결과와 실제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개정안은 산후패드 등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안도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 품목의 공급가액 등 자료가 집계되지 않고 있어 추계가 어려우므로, 동 추계 결과에 포함하지 않음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7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국내산 생리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

- 2020~2024년 국내산 생리대 매출액은 연평균 6.0%, 국내산 영유아용 기저귀 매출액은 연평균 3.8% 증가한 것으로 추정
 - 국내산 매출액은 국내 업체의 연간 출하액에서 수출액을 차감하여 산출
 - 수출액은 생리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 관련 품목코드(HS)의 수출액을 합산한 금액¹⁾
 - 수출액(달러 기준)에 연간 평균 환율(원/달러)을 반영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함
* ('20) 1,180 ('21) 1,144 ('22) 1,292 ('23) 1,305 ('24) 1,364
 - (생리대 매출액) 2020년 4,075억원에서 2024년 5,141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한 것으로 추정

1) 생리대 관련 6개 품목코드(HS Code 9619.00-1090, 9619.00-2000, 9619.00-3010, 9619.00-3020, 9619.00-4000, 9619.00-9090), 영유아용 기저귀 관련 2개 품목코드(9619.00-1010, 9619.00-9010)의 수출액을 합산하여 사용함

- (영유아용 기저귀 매출액) 2020년 4,824억원에서 2024년 5,607억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한 것으로 추정

[표 2] 국내산 생리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 매출액 추정: 2020~2024년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
생리대	출하액 ¹⁾ (A)	4,703	4,358	4,744	5,216	5,546	4.2
	수출액 ²⁾ (B)	629	551	483	415	406	-10.4
	국내산 매출액 (C=A-B)	4,075	3,807	4,261	4,801	5,141	6.0
영유아용 기저귀	출하액 ¹⁾ (D)	5,216	6,020	5,701	5,661	5,899	3.1
	수출액 ²⁾ (E)	393	593	295	298	293	-7.1
	국내산 매출액 (F=D-E)	4,824	5,427	5,405	5,364	5,607	3.8

주: 1. 최신 자료(출하액의 경우 2024년 자료까지 발표됨)를 기준으로 작성

1) 「광업제조업조사」의 출하액에는 부가가치세액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관세청의 수출액 자료(미국달러 기준)에 해당 연도의 원/미국달러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자료: 통계청, 연도별 「광업제조업조사」; 관세청, 연도별 수출입무역통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기간 국내산 생리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 매출액은 2027년 1조 2,396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

- 최근 5년간 매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생리대 6.0%, 영유아용 기저귀 3.8%) 추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3] 국내산 생리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 매출액 추정: 2025~2031년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생리대	5,448	5,774	6,119	6,485	6,873	7,285	7,720
영유아용 기저귀	5,822	6,045	6,276	6,517	6,767	7,026	7,295
합계(G)	11,270	11,819	12,396	13,002	13,640	14,310	15,015

- 국내산 생리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영세를 제도로 전환할 경우 감면액은 2027년 귀속 기준 95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

- (면세 적용) 감면액은 ‘매출액 × 부가가치율 × 세율(10%)’로 추정
 - 부가가치율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상 해당 품목과 관련이 높은 산업(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의 최근 평균 부가가치율(23.3%)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4] 국내산 생리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 2020~2024년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부가가치율(H)	25.9	23.1	22.0	23.0	22.4	23.3

자료: 한국은행, 연도별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영세율 적용) 감면액은 ‘매출액 × 세율(10%)’로 추정
- (감면액 차이)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영세율로 변경 시 감면액은 2027년 951억원 증가 예상

[표 5] 국내산 생리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영세율로 변경 시 감면액 변화 추정(귀속 기준):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면세 적용 시 감면액($J=G \times H \times \text{세율}$)	289	303	318	333	350
영세율 적용 시 감면액($K=G \times \text{세율}$)	1,240	1,300	1,364	1,431	1,502
감면액 차이($L=K-J$)	951	997	1,046	1,098	1,152

나. 수입산 생리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

- 2020~2025년 수입산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생리대의 경우 연평균 2.6% 감소하고, 영유아용 기저귀의 경우 연평균 6.9% 증가하는 추세
 - 수입액은 생리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 관련 품목코드(HS)별로 수입신고 당시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집계한 금액임

[표 6] 수입산 생리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현황: 2020~2025년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감률
생리대	62	55	57	54	50	50	-2.6
영유아용 기저귀	116	115	131	142	169	150	6.9
합계	178	170	188	196	219	200	4.1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수입산 생리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시 감면액은 2027년 219억 원 수준으로 추정
- 최근 6년간 수입 시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의 연평균 증감률 추세(생리대 -2.6%, 영유아용 기저귀 6.9%)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7] 수입산 생리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감면액 추정(귀속 기준):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생리대	47	46	45	44	42
영유아용 기저귀	172	184	196	210	225
합계	219	230	241	254	267

다. 세수효과

- 개정안에 따라 생리대 및 영유아용(지방소비세 포함)은 2027년 932억 원 등 2027~2031년 5년 간 총 6,167억 원(연평균 1,23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추계에 활용한 자료가 귀속 기준임을 감안해, 징수 기준으로 추계액을 조정함
 - (국내산) 국내 일반과세자의 신고·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 당해연도 3/4, 차년도에 1/4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 (수입산) 수입신고 시 세액이 신고·납부되므로, 귀속 기준 금액이 징수 기준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반영

[표 8] 생리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세수효과(징수 기준):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및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 (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932	-1,215	-1,275	-1,339	-1,405	-6,167	-1,233
- 국세(74.7%)	-696	-908	-953	-1,000	-1,050	-4,607	-921
- 지방소비세(25.3%)	-236	-308	-323	-339	-356	-1,560	-312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2217307)」의 의결을 전제로 재정수입의 변화를 추계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김효경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경	02-6788-4647	hkkim@assembly.go.kr